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중소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한시정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기업부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487”을 “488”로 하고, 일반직 계 “481”을 “48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4”를 “465”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1조 관련)

제31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2
일반직 계	22
5급 이하	2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1조(한시정원)</u> ① ~ ④ 삭 제 ⑤ <u>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⑥ <u>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에 둔다.</u>	<u>제31조(한시정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에 둔다.</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7</u>	<u>488</u>	+1
•	•	•	
•	•	•	
일반직 계	<u>481</u>	<u>482</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64</u>	<u>465</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6